

제287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례안

(16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5-80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5-81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략담당관)	9
2025-82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략담당관)	16
2025-83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28
2025-84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35
2025-85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39
2025-86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60
2025-87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과)	68
2025-88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85
2025-8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94
2025-90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108
2025-91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	122
2025-92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30
2025-9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145
2025-94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153
2025-95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농업과)	165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37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법령위임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
- 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48조·제60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68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1,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제5항 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u>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u>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u>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u>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u>
<u>제3조(구성) ①~④ (생략)</u>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u>	<u>제3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u>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
- 나. 관련조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안 제2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예산 1,000천원
 - 1)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2) 10명*1회*100천원 = 1,000천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
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
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
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
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38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로 이어진 관계를 생활인구 확대에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자 예우 사항 확대 등을 정함(안 제17조)

- 1)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 2)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제12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제7조제3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을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예우할 수 있다.”를 “예우(이하 “기부자 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자 예우”를 “기부자예우”로 한다.

3.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u>답례품의 품목</u>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u>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u>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u>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u>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삭 제>

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
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
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고향사
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
자”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
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신 설>

3.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
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고향사
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
자”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
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
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3.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
일한 감면 혜택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
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822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5-39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설치·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정함(안 제3조~제8조)

1)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관계 공무원

나.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지원계획, 주민지원사업 신청, 주민지원 협의체를 정함(안 제9조~제12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본예산 확보예정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오가·용동·월포·남불·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 나. 주민공동사업
 -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
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금의 용도

나. 관련조문: 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계
세입						
군비(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징수액의 20 퍼센트 등)	4,030,000	2,000,000	206,600	206,600	206,600	6,649,820
세출						
기금의 용도(주민생활 지원금 및 주민공동 사업 등)	4,030,000	2,000,000	206,600	206,600	206,600	6,649,800

가. 화장시설 사용료 등 징수액에 따라 비용추계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보고 참고
(2024. 8. 27.)

3. 기금 조성 및 지출 계획

가. 2026년~2027년

1)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6,030,000천원

2) 지출: 6,030,000천원 지원

나. 2028년~2030년

1) 조성: 사용료 징수액 20퍼센트 619,800천원

2) 지출: 619,800천원 지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남하면 월곡마을이장 김위선	- 주변지역 중 인접지역 마을에 '월곡마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여 주기를 건의함 ※ 주변지역 중 인접지역 마을에 산포, 오가, 용동, 월포, 남불, 전척 6개 마을을 정함	- 주변지역 중 인접 6개 마을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2km 이내에 있는 마을이며 - 이를 정한 이유는 타 지자체 사례, 피해지역 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였음 - 개인차가 심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 월곡마을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2km 초과하여 있으므로 - 월곡마을을 주변지역 인접마을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 대야마을과 6개 인접마을 외에도 인센티브 지원이 되도록 월곡마을이 포함되는 남하면(유치면)지역을 별도로 조례(안)에 정하였음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5-40
----------	---------

제출일자	2025. 5. 28.
제출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는 호응 부족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제정 2009. 12.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랑 사이버 군민화를 통한 군 발전 인적자원 발굴을 도모하고 도·농 간 정보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 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가상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으로서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구축한 “거창 愛 살어리랏다”(이하 “사이버거창홈페이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거나 거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거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거창군민”이란 거창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거창 발전의 원동력이 될 가상의 군민으로서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사이버거창군민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사이버거창군민증”이란 사이버군민제도의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5. “사이버거창가맹점”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숙박업, 레저·스포츠업 등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인을 말한다.

6.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탈퇴·이용방법·규제 및 분쟁의 조정 등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제3조(자격) 사이버거창군민은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거창군과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① 사이버거창군민이 되려는 자는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약관동의, 군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거창군민 등록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사이버거창군민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이버거창군민증을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구축·운영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거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거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 간 또는 사이버거창군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4.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활성화와 사이버군민제도의 조기 정착, 사이버거창군민 발굴 등을 위한 각종 이벤트(Event) 개최
5. 사이버거창가맹점 확보 및 등록승인 등 관리
6. 사이버거창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7. 그 밖에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군수는 사이버거창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 1. 사이버거창군민증 수여

2.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 관람권)
3. 사이버거창가맹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할인쿠폰(Coupon) 제공
4. 군의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5.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농산물 특판행사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6.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이벤트나 퀴즈행사,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이용실적에 따라 별표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를 쌓은 사이버거창군민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등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
3. 사이버군민제도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이버군민제도의 추진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시행 2025. 5. 7.]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936호, 2025. 5. 7.,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 라.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거창한군민 가맹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7조(거창한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거창한군민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
2. 거창한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거창한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거창한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거창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5-41
----------	---------

제출일자	2025. 5. 28.
제출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정 2013. 11. 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

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군수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범군민의식개혁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범군민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범군민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군민의식개혁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군민의식개혁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3. 범군민의식개혁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의 교육 및 홍보
5.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사업 : 질서, 환경, 안전운동
2. 친절거창운동 추진사업 : 친절, 예절운동
3. 아람1004운동 추진사업: 기부, 나눔, 칭찬운동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류 및 협력) 군수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2
----------	---------

제출연월일	2025. 5. 28.
제 출 자	민원소통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 12. 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나. 선정대리인 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9조)

- 1)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 2)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
- 3)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다.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이관함(안 부칙 제2조)

- 1) 현행: 재무과 소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근거
- 2) 변경: 민원소통과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93조의2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8.~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중 “공휴일·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18조(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

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18조(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3. 3. 14.>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 12. 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9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 12. 29.]

[개정이유] 2020. 12. 29.

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 2020.12.29. 개정으로 조 분리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질의제목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1.)

1. 질의요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조례안에서 같은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7. 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 민원처리법에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서 두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의 경우는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78 결정정,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관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군조례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달리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안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질의·답변 중 P16

- 질의: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답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법률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3
----------	---------

제출연월일	2025. 5. 28.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1. 제안이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함(안 제3조)

- 1) 현행: 연임제한 없음
- 2) 변경: 세 차례만 연임 가능

나.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21조)

- 1)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3,100백만원(도1,176, 군1,924)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유형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기업유치 특별지원 범위 확대

나. 관련조문: 입지보조금(제4조), 고용보조금(제5조), 교육훈련보조금(제6조), 설비보조금(제7조), 이전보조금(제8조), 기업유치 특별지원(안 제2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	2차연도 (2026)	3차연도 (2027)	4차연도 (2028)	5차연도 (2029)	합계
계	-	3,100	4,200	4,200	4,200	15,700
도비	-	1,176	2,940	2,940	2,940	9,996
군비	-	1,924	1,260	1,260	1,260	5,704

3. 관련 의견

2027년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상에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포함하는 등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6년 투자완료예정기업 보조금 지원

: 3,100백만원(도 1,176, 군 1,924)

2. 2027년~2029년 입주예정기업 보조금 지원

: 4,200백만원(도 2,940, 군 1,260)

* 연평균 3개 기업(40억 투자 중 부지매입비 20억 가정 시)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 미 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5-44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신달자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달자문학관의 설치근거, 명칭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문학관의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제한 등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라.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을 정함(안 제8조)
- 마. 이용 신청, 이용의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바.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별표 1·2)
- 사. 이용자의 설비,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550천원 추경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4. 29.~5.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
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
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신청 등) 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

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시설	기준	이용료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강의실	1일	10,000원	평일 금액에 20 퍼 센 트 가산한 금액	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5,000원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신달자문학관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설치 등(안 제2조), 사업(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총 비용(a - b)		30.5	97	98	98	99	422.5
세출(a)	군비	30.5	98	99	99	100	426.5
세입(b)	이용료		1	1	1	1	4

나. 문학관 리모델링 비용: 500백만원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6년 예산 98백만원

1. 문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1명 27백만원
2. 문학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1명 13백만원
3. 프로그램 운영: 40백만원
4. 사무기기 임차 등 공공운영비: 18백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5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활동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창군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을 신설함(안 별표)
- 나. 사무의 위탁을 정비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7,36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의 세부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u>○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 설></u>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 ○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문화예술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문화예술 법인·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예술인 거주·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활동 등 지원
- 나. 관련 조문: 지역문화 지원사업(안 별표)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지원내용 추계: 47,360천원(2025년 본예산 편성)
 - 1) 임대료: 레지던시 입주 예술인 거주공간 무료 제공
 - 2) 창작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7,360천원
 - 가) 창작활동비 지원: 12,000천원(500,000원×4명×6월)
 - 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당: 15,360천원
 - (1) 80,000원×4명×8회×6개월
 - 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20,000천원(물품 등)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1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
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
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
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3. 3. 21.]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
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
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정한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6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1)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센터

나.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별표 2·3, 삭제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3조 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은”을 “복지센터는”으로 각각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8조)제4항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일부 및”을 “일부나”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로 하고 시설구분란 제2호 중 “소강당”을 “프로그램실, 소회의실”로 하며 비고란 중 “토·일요일,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등의 반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 이용이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명칭 및 위치)</u>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u>제3조(복지관의 사업)</u> 복지관은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u>제4조(사용허가)</u>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복지관</u> 이용을 제한하거나 <u>사용허가</u>를 취소할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u>제3조(복지센터의 사업)</u>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u>제4조(이용신청 등)</u>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u>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복지센터</u> 이용을 제한하거나 <u>이용허가</u>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제6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수강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1명/1과목)	
6.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	
1. <u>국가보훈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u>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u>그 밖에 복지센터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100분의 50

- 비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별표 3]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이용료	1. 천재지변, <u>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u> 로 <u>이용</u>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u>이용료</u> 전액 반환
	2. <u>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u> 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나. 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반환 <u>및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u> 나. <u>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u>
	3. <u>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u> 가. <u>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u> 취소 나. <u>이용</u> 중에 <u>이용</u> 을 취소	가. <u>이용료</u> 전액 반환 나. <u>이용료를</u> 일할 계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 <u>이용료</u> 전액 반환
수강료	강좌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수강료 전액 반환
	강좌 수강 중 취소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u>수강료</u> 전액 반환

-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삭 제>

[별표 4]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제6조제4항관련)

1. 주차요금

(단위: 원)

구 분	일반차량			복지관 직원차량	
	30분초과부터 40분까지	40분초과 10분마다	하루	하루	한달
주차요금	500	200	5,000	2,000	30,000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나.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 주차 제한

- 1)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
- 2)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 3)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차요금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가.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나. 복지센터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다. 복지센터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라. 공무용 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마. 복지센터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다만,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다.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름)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 12. 24.>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와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8. 3.>

⑥ 삭제 <2012. 8. 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
2.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3.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7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이후 유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로 용어 등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별표 1~3)
(현행) 공설공원묘지
(변경) 공설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포괄하는
법적 용어
-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
- 다.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에 대한 유골 및 사용료등의 반환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제20조·제23조·
제28조,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권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 제목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공원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제11호를 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공설공원묘지와”를 “공설장사시설과”로 한다.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20년, 25년 또는 30년 단위로 한 차례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 제목 “(분묘의 형태 등)”을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묘”를 “분묘 및 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제목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의 설치·명칭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이하 “공설공원묘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	<u>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

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삭 제>

<삭 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와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15년, 20년, 25년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20년, 25년 또는 30년 단위로 한 차례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의 형태 등)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면적 (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u>매장</u>	<u>봉안</u>	<u>자연장</u>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분묘	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분묘	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분묘	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분묘	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분묘	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분묘		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분묘	봉안당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u>장사시설</u>		<u>사용료(30년)</u>		<u>관리비(30년)</u>	
<u>구분</u>	<u>유형</u>	<u>기준</u>	<u>금액(원)</u>	<u>기준</u>	<u>금액(원)</u>
<u>분묘</u>	<u>봉분</u>	1기당	600,000	1기당	400,000
	<u>평장</u>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u>봉안</u>	<u>봉안묘</u>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u>봉안당</u>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u>자연장</u>	<u>자연장지</u>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24. 1. 23.>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립”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 목적

- 공설봉안시설별 이용(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보관기간 및 처리방법 등 지자체별·시설별 운영방식 상이
- 전국의 봉안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각 지역·시설 간 운영 개선 방안 검토

☐ 법적 근거

- (공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에서 지자체장의 공설봉안시설 설치·조성·관리 의무 및 설치기준 규정
* (장사법 제13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 제외*,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관할 공설봉안시설 설치·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규정 부재: 제주시(6개), 전남 해남군(1개, 화원관광단지 개발 무연분묘 안치) 등 총 7개소

~생략~

☐ 공설 봉안시설 운영 현황('24년 9월말 기준)

- (이용가능기간) 기본이용기간은 15년 이상~30년 미만이 64.7%, 최대이용기간은 30년 이상~50년 미만이 47.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봉안시설 이용 가능 기간>

(단위 : 개소, %)

기본 이용기간						최대 이용기간					
계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15년이상 ~30년 미만	30년이상 ~45년 미만	45년 이상	계	10년 미만	30년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60년 이상	제한 없음
201	1	20	130	49	1	201	7	96	1	83	14
100%	0.5	10.0	64.7	24.4	0.5	100%	3.5	47.8	0.5	41.3	7.0

-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기간 5년이 30.3%로 높은 비중 차지,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시설은 40.8% 차지

※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보관하고 있는 유골은 총 19,275건

- 장사법령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골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기간은 주로 해당 규정 준용

* 「장사법시행령」 제9조에서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기간 종료 후 산분 또는 자연장하도록 규정

<봉안시설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별도 보관기간>

(단위 : 개소, %)

계	1년 미만	1년	5년	10년	규정없음
201(개소)	16	35	61	8	82
(%)	8.0	17.4	30.3	4.0	40.8

- (처리방법) 기간 종료 후 처리방식은 산분 또는 자연장이 62.2%, 집단매장이 15.9%이며, 별도 규정이 없는 시설도 20.9% 차지

<봉안시설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처리방식>

(단위 : 개소, %)

계	산분 또는 자연장	집단매장	규정없음	기타 (임의처리)
201(개소)	125	32	42	2
(%)	62.2	15.9	20.9	1.0

□ 향후 계획

- ‘25년 봉안시설 설치사업 지원, 집행관리 철저(‘25년 정부안 230억, 18개소)
- 자연장 및 산분장 활성화 위한 장사문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계속)
 - 분묘 개장을 통한 자연장 전환 유도를 위한 공익캠페인 지속 전개
-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운영기준이 미비한 지자체(봉안시설)에 관련 규정 정비 요청(‘24.12.3)

□ 행정 협조 사항

- (지자체) 공설봉안시설 운영 규정 정비(‘25.6월까지) 및 결과 보고(‘25.7.11)
 -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관련 운영기준이 없는 봉안시설은 규정 신설, 운영기준이 있더라도 내용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규정 개정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5-48
----------	---------

제출연월일	2025. 5. 28.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화재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소실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3) 빈집, 중복지원 등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거창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폐기물”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증명원에 소실면적이 화재 피해 대상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화재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나. 관련조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가. 경남도 내 시군 평균 지원 수: 5건

나. 평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4,000천원

다. 5건 * 4,000천원 = 20,000천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29. (생략)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49
----------	---------

제출일자	2025. 5. 28.
제출자	환경과장

1. 제안 이유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내용 신설함(안 제2조·제3조·제7조)

- 1) 정의, 군수의 책무
- 2) 배출 및 처리 방법

나. 용어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5·제15조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2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4. 29.~5.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5호(종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조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조 제목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8조 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
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
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
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삭 제>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따른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신 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
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
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
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u>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안내문
제작배포 등

나. 관련 조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수거 등 관리체계 마련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비용이 5천만원 미만

1) 수거함 구입 평균 금액: 400천원 × 50개소 정도 = 20,000천원

2)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5,000천원 정도

작성자 환경과장 표정애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

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4.] [환경부령 제1168호, 2025. 4. 4., 일부개정]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2022. 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폐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34.(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장치
2. 실외이동로봇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4 - 276호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1. 폐농약 수거처리 실시 및 활성화	① 폐농약 수거·처리 실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② 홍보 강화방안 마련	
	③ 지자체장의 폐농약 수거·처리 시책 마련 및 추진 책무를 조례에 규정	
2.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①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환경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 폐농약 배출 교육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① 농약판매관리인 대상 교육 시 폐농약 배출 방법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농촌진흥청
	② 농업기술포털(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폐농약 배출 요령 게재	
	③ 농약 포장지에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0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1) 대상: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 2) 내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3)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합동평가대상

나. 예산조치: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의 교육 일괄 시행에 따라 예산 불필요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23.~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필수조례 참고조례안 반영함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u> <u>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u> <u>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u> <u>3. 장애인의 인권</u> <u>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u> <u>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u> <u>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u> <u>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u>제16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u>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u> <u>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u> <u>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u> <u>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u> <u>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u> <u>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u> <u>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 <u>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u> <u>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u> <u>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u> <u>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u> <u>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u> <u>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u> <u>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u> <u>3. 성폭력 예방교육</u> <u>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u>

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
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
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972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을 받아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다음 각 호의 교육</u>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⑦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경상남도조례 제503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

5.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7.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연수기관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1
----------	---------

제출연월일	2025. 5. 28.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1.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명, 별표)
-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비용을 신설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도로교통법」 제2조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u>	<u>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u>

[별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대상 차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신 설>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2.5톤미만	72,200원
2.5톤이상~4톤미만	100,300원
4톤이상~8톤이상	128,000원
8.0톤이상~12톤이상	154,400원
12톤이상	174,500원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9. (생략)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18의3.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1의3. (생략)

24. “주차”란 운전자나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나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나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34.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 5. 26.>
 9. 삭제 <2020. 5. 26.>
 - 9의2. 삭제 <2020. 5. 26.>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 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6. 28.]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 6. 28.]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 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52
----------	---------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제안이유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안 제9조)

- 1) 현행 무료범위: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 2) 추가: 농산물 잔류농약
- 3) 예외 징수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제154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1.~3.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u>	<u>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u>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u>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u> <u>② 제5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u>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삭 제>

구분	수수료(원)	기준
1. 거창군 농업인	가. 1점 10,000 나. 1년 60,000	작물당 부과 연회비
2. 기관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1점 348,000	작물당 부과

[별표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삭 제>

감면대상	감면율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 신청을 하려는 농업인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령농업인, 여성농 업인 등	100분의 50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참여 농업인 3. 3무(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4.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무료

나. 관련 조문: 분석 수수료(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2023. 12. 종합분석실 운영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현황

1) 대부분 공공급식: 무료

2) 농가 1건: 230,000원

나. 분석 수수료 무료로 인한 세입감소 거의 없음

작성자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 1.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시행 2021. 10. 25.] [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6호]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 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9.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5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